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91
----------	-------

제출년월일 : 2019. 07.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민간투자심사위원회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통합·운영하여,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고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규정 개정(안 제1조)

- 조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

나. 구성 규정 개정(안 제3조)

- 민간투자사업심의 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행 근거 마련

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 간사(안 제4조~제8조) 및 수당 등(안 제11조) 삭제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9. 6. 7. ~ 6. 27. (제출된 의견 없음)
- 2)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원안 동의
- 4)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5)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9. 7.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u>」 제4조제9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u>」 및 <u>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u> ----- ----- ----- -.</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안전행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투자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3조(위원회의 운영) 제2조에 따른 심의 사항은 「<u>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u>」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p> <p>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삭 제></p>
<p>제5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p>	<p><삭 제></p>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삭 제>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삭 제>

② 간사는 위원회 개최 시 회의 개요, 심의사항 및 결과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
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
다.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1호에 해당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안명희 (☎ 3153-8512)